

의안번호	제595호
의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95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5월 3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신규 위임사무 및 위임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<근거 법령개정>

- (에너지과) 전기사업자,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·개조·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: 전기사업법 제71조 → 전기사업법 제7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제1호

<부서변경>

-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
- 산단과리과 → 투자유치과

<신규 위임사무>

- (축수산과) 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무」 11건
- (교통철도과)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
- 선정기준, 대행기간,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, 대행자의 변경

3. 의안전문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: 불임

6.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에너지과란의 제4호의 근거법령란 중 “전기사업법 제71조”를 “전기사업법 제71조,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제1호”로 한다.

별표 1의 산단관리과란의 제4호를 삭제하고, 산단관리과란 앞에 투자유치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투자유치과	1	•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	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
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별표 1의 축수산과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	• 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사무 가.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나.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다.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. 처리업자의 권리·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마.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 바. 처리업자의 허가의 취소, 영업정지, 청문실시 사.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과징금 사용 아. 처리업자의 휴업과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의 수리 자.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·운영 차. 재활용제품 판로 확대 카. 과태료 부과·징수	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1항, 제3항 같은 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,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, 제3항, 제4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6조제1항, 제2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3항
---	--	--

별표 1의 교통철도과란의 제1호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		사.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, 선정기준, 대행기간,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, 대행자의 변경, 지정취소, 사업정지 명령	같은 법 제20조, 제21조,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
--	--	-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공통사항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【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】

제3조(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,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(이하 “행정권한”이라 한다)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, 다른 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.

에너지과

【전기사업법】 (이전) 공포 2020. 2. 18. / 시행 2021. 1. 1.

제71조(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) 허가권자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, 자가용전기설비·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(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·개조·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.

【전기사업법】 (현행) 공포 2022. 12. 27. / 시행 2023. 6. 8.

제71조(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)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·개조·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.

【전기안전관리법】 (신설) 공포 2020. 3. 31. / 시행 2021. 4. 1.

제20조(적합명령)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, 자가용전기설비·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·개조·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.

1.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2.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축수산과

【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】

- 제7조(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) ① 수산물을 포획·채취·양식·가공·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”라 한다)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.
- ②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- 제8조(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·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9조(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)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처리업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·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
2. 허가증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

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·변경허가·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·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
1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
2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가(換價)
3. 「국세징수법」·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

제11조(처리업자의 준수사항) 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
2.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
3.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3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는 처리업자(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
2.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3.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

4.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

5.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6.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

7.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8.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) ① 시·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.

1. 수산부산물의 적체(積滯) 등으로 수산부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 2. 해당 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
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시·도지사가 사용하되,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5조(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)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(이하 “자원화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·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시·도지사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재활용제품 판로확대)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, 비료, 사료, 화장품, 의약품, 공유수면 매립재, 건축물자재, 탈황제, 소석회 등의 재활용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과태료)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2.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
3.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·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4.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5.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
6.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교통철도과

【자동차관리법】

제20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 번호판의 제작·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(이하 “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-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,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(凸形)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, 유출(流出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
-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
-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
-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,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

6.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(收受)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 7.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 8.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
 9.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·재질·색상 등 제식(制式)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·발급한 경우
 10.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【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】

제3조(대행자의 선정기준) 도지사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기준과 사업계획서,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, 등록관청과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4조(대행기간)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, 대행자가 대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의2(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)
① 대행자는 적정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.
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대행자의 변경신고) ①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1. 상호(명칭)가 변경된 경우
 2. 대행자의 성명이 개명(改名)되거나, 대행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
 3.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또는 장비 규격이 변경된 경우
 4.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)가 변경된 경우
 5.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-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사항 중 대행자지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 및 위임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김은영